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행정기획위원회(행정지원과)

의안번호	제 15 호
제 출 자	이호건 의원외 16명 (2022. 8. 10.)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 진 만

1. 제안이유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단체협약에 따라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관한 사항(안 제2조~안 제4조)
- 나.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 등 및 정원, 채용 등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10조)
- 다. 신분 및 사회보험의 가입, 복무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안 제 11조~안 제23조)
- 라.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와 표창, 징계,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사항(안 제24조~안 제3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2022. 8. 16. ~ 2022. 8. 22.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 근무하는 **공무직¹⁾**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공무직이란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 직종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제4조(직종의 구분) 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직

1)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인사혁신처훈령 제129호, 2021.12.30.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2. 3호 (생략)

4. “상시적·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 ① 공무직근로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원직 : 행정실무원[사무(보조)원, 민원상담원, 조리원 등]

2. 시설직 : 시설관리원(건축, 기계, 전기, 통신분야 및 시설 관련 행정, 청사안내, 기숙사관리분야 등 종사원)

3. 환경미화직 : 청사미화원

② 직위는 직종별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종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1. 사무종사원 : 일반 사무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자료복사, 상담 등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시설관리원 : 시설물의 관리나 공사작업인부 등 주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일일근무 시간상 종일 내근을 요하지 아니하는 현장 근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도로보수원 : 도로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환경미화원 : 도로·가로청소, 쓰레기폐기물 수거·처리 및 청사내 쓰레기 수거·청소업무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의료급여관리사 :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필요한 보건복지 서비스연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6. 통합사례관리사 : 취약계층 및 그 가구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연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하는 공무원
 7. 아동통합사례관리사 :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하는 공무원
 8. 청소년상담사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센터 프로그램(상담, 미술놀이치료 등)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9. 직업상담사 :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일자리플러스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0. 방문간호사 :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② 제1항제1호의 사무종사원은 세입·세출, 보상업무, 회계장부관리, 금전취급, 기록검사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사무를 위해 채용될 수 없다.

○ 본 조례안은 총 30개의 조문과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됨.

조문	규정사항	조문	규정사항
제1조	목적	제16조	퇴직급여
제2조	정의	제17조	복무의무
제3조	적용범위	제18조	다른 조례의 준용 등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19조	정년

제5조	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	제20조	해고 등의 제한
제6조	정원	제21조	휴직 등
제7조	채용	제22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8조	채용 결격사유	제23조	후생복지
제9조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	제24조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제10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	고충처리
제11조	직종의 분류 등	제26조	표창
제12조	신분증	제27조	징계
제13조	보수결정의 원칙	제28조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제14조	실비보상	제29조	손해배상
제15조	사회보험의 가입	제3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안 제1조** : 본 조례안의 목적이 공무직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임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2조** : 공무직, 상시적·지속적 업무, 채용, 지원부서, 소속부서에 대한 정의를 함.
- **안 제3조 및 안 제4조** : 공무직의 적용범위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 ~ 안 제6조** : 공무직에 대한 임면권 등과 정원을 규정함.
- **안 제7조 ~ 안 제8조** :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 원칙과 채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
- **안 제9조 ~ 안 제10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2)의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채용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전환 심의위원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안 제9조 제2항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되며,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함.

- 안 제11조~ 안 제23조 : 공무원의 신분 및 사회보험의 가입, 복무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4조 ~ 안 제30조 :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와 표창, 징계,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상위법령은 없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을 적용함.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관리 규정」은 구청장 훈령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3)에 따라 공무원의 관리를 위하여 정원과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였음.

본 조례안은 관련된 상위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의 고용안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여 그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됨.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 3.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이후 집행부에서는 7개 조항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었으나, 조례안을 발의한 이호건 의원과 정책지원관, 구청 담당자와의 협의로 다음과 같이 5개 조항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명 변경 : 고용안전→고용안정(단순 오타 수정)
2. 안 제18조(다른 조례의 준용 등) 삭제 : 법리 구조에 모순되는 조항으로 삭제 요청
3. 안 제22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수정
4. 안 제29조(손해배상) 삭제 : 행정안전부 공무원직 규정과 충돌
5. 안 제30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수정 : 단체협약 삭제